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673

발의연월일: 2022. 7. 27.

발 의 자: 박성준 · 문진석 · 신정훈

이형석 • 전용기 • 조정식

허종식 · 임종성 · 민병덕

윤재갑 • 이용빈 • 김민기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상가 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상가 임대인이 임대료를 낮추는 경우 그 인하한 금액의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 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전세계적 물가상승 현상으로 인한 경기둔화 우려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해당조세 특례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면서 세액공제율 역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세액공제율을 현행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의3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100분의 70"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 례) 제9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임대료 수입금액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	①
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	
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	
일부터 <u>2022년 12월 31일</u> 까지	<u>2024년 12월 31일</u>
(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	
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	
대료 인하액의 <u>100분의 70</u> (대	<u>100분의 80</u>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	
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	
세에서 공제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